

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 권 자 〇〇〇(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타경〇〇〇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귀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20〇〇. 〇. 〇. 반았는바, 압류채권자는 아래의 금액으로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그 담보로 매수신청액과 최저매각가격의 차액 금 〇〇〇원을 귀원 20〇〇 금 제〇〇〇호로 공탁하였기에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매수신고액: 금 〇〇〇워

첨 부 서 류

1통

1. 공탁서정본

2000. 0. 0.

위 압류채권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위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02조
मो &	인지액 : 불첩부		
기타	인지액: 불첩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02조). ・압류채권자가 1주 기간이 지난 후라도 법원의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의 제공을 하면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계속하여 진행됨(대법원 1975. 3. 28.자 75마64결정)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 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민사집행법 제102조)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2. 1.자 95마1143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